

의안번호	제 710 호
의 결 연 월 일	2017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박우양 의원 등 6인
발의연월일	2017년 9월 29일

충청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우양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10
----------	-----

발의연월일 : 2017년 9월 29일

발의자 : 박우양, 김영주, 이양섭,
박종규, 윤은희, 이광희,

1. 개정이유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 개정
 -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정교부금의 재원 및 배분 기준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정교부금의 재원 (제4조)

- 시·군에서 징수하는 도세의 총액 중 제외항목 추가
(기존)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변경)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나.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배분 신설 (제4조)

- 도지사는 화력발전에 대한 각각의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화력발전소가 있는 시·군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3.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신·구 조문 대비표 : 붙임

다. 입법예고 :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2호 ‘상위법령등의 단
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생략함.

라. 협의 :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과 협의함.

마.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충청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특정부동산**” 을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 으로 한다.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도지사는 **화력발전에 대한 각각의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화력발전소가 있는 시·군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조정교부금의 재원) ① 조 정교부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 의 금액의 27퍼센트(인구 50만 이상의 시와 자치구가 아닌 구 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경우에 는 4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 한다.</p> <p>1. 시·군에서 징수하는 도세 (<u>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는 제외 한다</u>)의 총액</p> <p>2. (생 략)</p> <p>② (생 략)</p> <p><u><신 설></u></p>	<p>제4조(조정교부금의 재원) ① --- ----- ----- ----- ----- ----- -----.</p> <p>1. ----- (<u>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 설세, 특정부동산</u> --) -----.</p> <p>2.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도지사는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 에 해당하는 금액(「지방세징수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징수 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화 력발전소가 있는 시·군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u></p>

관계법령 발취

□ 지방재정법

제29조(시·군 조정교부금) ① 시·도지사(특별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의 27퍼센트(인구 50만 이상의 시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경우에는 4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할 시·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1. 시·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세·도세(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총액

2. 해당 시·도(특별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방소비세액을 전년도 말의 해당 시·도의 인구로 나눈 금액에 전년도 말의 시·군의 인구를 곱한 금액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정교부금의 재원을 인구, 징수실적(지방소비세는 제외한다), 해당 시·군의 재정사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의 시·군에 배분한다.

③ 시·도지사는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각각의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화력발전소·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군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 지방세징수법

제17조(도세 등에 대한 징수의 위임)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시·군·구 내의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이하 “시·도세“라 한다)를 징수

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납입할 의무를 진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필요한 경우 납세자에게 직접 납세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도세 징수의 비용은 시·군·구가 부담하고,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부율과 교부기준에 따른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비용으로 시·군·구에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세와 함께 징수하는 시·도세와 「지방세기본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해당 지방세의 고지서에 병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